

COP27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 **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15:30 (국회기후변화포럼 유튜브 )
-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 **주최** :  국회기후변화포럼
- ❖ **주관** : 대표의원 한정애·유익동 | 연구책임의원 임종성 | (정회원) 국회의원 강선우, 고용진, 기동민, 김상희, 김영주, 김윤덕, 박병석, 박영순, 안호영, 윤재옥, 이수진(지), 이용우, 이형석, 황보승희 | (준회원) 국회의원 김성주, 김승원, 김 웅, 김한정, 남인순, 노웅래, 민홍철, 박 정, 변재일, 서범수, 설 훈, 신현영, 안병길, 양금희,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윤재갑, 이만희, 이명수, 임이자, 조승래, 홍석준

진행순서

- **개회식 (15:30~15:50)** * 사회: 이성조 포럼 사무처장
 - 개 회 사 : 유의동 국회의원(포럼 대표의원)
 - 환 영 사 : 한정애 국회의원(포럼 대표의원)
 - 인 사 말 : 양정숙 국회의원(포럼 의원회원)
 - 축 사 :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포럼 의원회원)

* 주요인사 기념촬영

- **기조 발제 (15:50~16:10)**
 - COP27 협상 주요 결과와 시사점 /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 **의제별 주요내용 (16:10~17:30)**
 - 손실과 피해: 정재희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행정관
 - 적 응 : 강주연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
 - 감 축 : 이수민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재 원 : 강정훈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사무관
 - 시 장 :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차장

- **패널 (17:30~18:20) / 좌장: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포럼 고문)**
 - 노동운 한양대학교 교수
 - 이해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진윤정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 정재혁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사무관
 - 박연정 고려대학교(포럼 COP27 대학생 참관단원)

- **질의 응답 (18:20~18:30)**

▶▶ 기조 발제



COP27 협상 주요 결과와 시사점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삼엘쉐이크 기후변화총회 (COP27) 결과와 과제

김 호 은
기후변화대사



COP 27 회의 구조

11.6.(일)	11.7.(월) ~ 8.(화)	11.9.(수) ~ 14.(월)	11.15.(화) ~ 16.(수)	11.17~18. (금)
개회식	정상회의	UN기후협상 회의 산하기구 회의	장관회의	폐회식
비공식 협상 회의, 각종 부대행사 등 병행				

		1주차						2주차					
일자	11.6(일)	11.7(월)	11.8(화)	11.9(수)	11.10(목)	11.11(금)	11.12(토)	일자	11.14(월)	11.15(화)	11.16(수)	11.17(목)	11.18(금)
주제				재원	과학 및 청년	탈탄소	적응 및 농업	주제	젠더	사민사회 에너지	생물다양성	해결책	
행사	10:00-13:00 COP27 개막식 (COP/CMP/CMA) 17:00-18:00 총회 공동 발언	10:00-18:00 정상회의 12:00-17:00 GST 기술대화	10:00-13:00 정상회의 16:00-19:00 GST 기술대화	10:00-17:00 GST 기술대화 14:00-17:00 신규 기후재원 장관급 대화	10:00-19:00 GST 기술대화 13:15-14:45 투명성 관련 트레이닝 프로그램	10:00-18:00 제13차 축진적대화(FS V) 11:00-13:00 GST 기술대화 폐막	10:00-13:00 제13차 축진적대화(FS V) 18:00-20:00 부속기구회의(S BSTA/SB) 폐회	행사	10:00-13:00 제5차 기후 재원 고위급 대화 15:00-18:00 Pre-2030 의욕 장관급 대화	10:00-18:00 장관급회의 15:00-18:00 COP27 의장단 주회 젠더 대화	장관급회의	15:00-18:00 COP27 제막회의 (COP/CMP/CMA)	10:00-18:00 COP27 제막회의 (COP/CMP/CMA)
협상		10:00-18:00 COP/CMP/ CMA' /부속기구	10:00-18:00 COP/CMP/ CMA /부속기구	10:00-18:00 COP/CMP/ CMA /부속기구	10:00-18:00 COP/CMP/ CMA /부속기구			협상	10:00-18:00 COP/CMP/CMA	10:00-18:00 COP/CMP/CMA	10:00-18:00 COP/CMP /CMA	10:00-15:00 COP/CMP/CMA	
													3

■ COP 27 이 직면했던 국제 상황 : 도전과 기회 혼재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글로벌 에너지 위기
- 중국의 코로나 방역 조치 → 봉쇄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 범세계적 인플레이션
- 미·중 갈등, 반러시아 연대(미국 및 유럽 중심)와 러시아 옹호국 (중국, 터키 등)간 냉전
- 전대미문의 자연재해 → 파키스탄 홍수, 서유럽 폭염 등
- 미국 및 유럽 주도 글로벌 기후 질서 형성 추진 → CBAM, IPEF(Pillar 3), 기후클럽, GFANZ, FMC 등

■ COP 27 우리 대표단 활동

- 대통령 특사단 활동 : 특별연설, 국제이니셔티브 참여, 양자연대 강화



- 의원단 외교 : IPU-UNFCCC 회의 국회기후변화포럼 의원단 참가
- 환경부 장관 : 각료급회의 연설, 양자회담, 부대행사 등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참석
- 정부부처 및 기관 합동대표단 : EIG 일원으로 협상 진전에 기여
- 한국 홍보관 운영 : 37개 행사, 53개 기관 참여
→ 전방위 협력 (whole of the society approach)

5

■ COP27 정상회의 주요결과 (COP 정상회의 관례화?)

- COP26에 연이어 정상회의 : 112개국 정상 참석
 - ✓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도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 표명
 - ✓ 개도국(특히 아프리카) 정상 대거 참석 → 아프리카 COP
 - ✓ 바이든 미대통령(11.11), 룰라 브라질 당선인(11.16) 참석 → 강한 의지표명
 - ✓ 한국(나경원 특사)과 중국(시젠화 특사) 특별 연설
- 5개 주제 정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 ✓ 공정전환, 혁신금융, 에너지의 미래, 식량안보, 기후취약그룹을 주제로 논의
 - ✓ 개도국 및 취약국 지원, 다양한 금융재원 확보, 미래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 기후 회복력 있는 농업 등 강조
- 중국, 인도, ASEAN 정상 불참 (G20 및 APEC 정상회의 등 일정)
- 녹색해운, 기후클럽, 산림 등 정상급 이니셔티브 진행
 - ✓ 한국 부산항-미국 타코마항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발족

▪ COP 27 주요결과 :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

- 파리협정 주요 내용인 감축, 적응, 자원, 기술, 역량배양에 더하여 **손실과 피해, 에너지, 해양, 산림, 조기경보, 정의로운 전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행동계획 도출
 - ✓ 과학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IPCC 6차 보고서 언급, 2025년 배출정점은 미포함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 감축은 포함)
 - ✓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반영, 에너지를 별도 항목으로 강조하며 에너지 믹스 다변화를 위해 clean energy mix 강조 (한국 등 주장)
 - ✓ 글래스고에 이어 2030년까지 메탄 감축 노력을 촉구
 - ✓ '물'의 중요성 언급 : 하천, 대수층, 호수 등의 복원과 보존, 적응노력에 '물' 관리 포함
 - ✓ 기후 재난을 반영, 조기경보와 기후정보에의 접근 강화 강조 (Early warnings for all initiative : UNSG)
 -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강조 : 사회적 대화 및 참여 강조

7

• 손실과 피해(Loss & Damage) 대응 : 개도국 최우선 의제

- ✓ COP 최초로 정식의제로 채택 : 92년 기후변화협약 논의 및 15년 파리협정에 문안 반영 이후 최대 성과
- ✓ 손실과 피해 문제를 대응할 펀드를 창설하기로 원칙적 합의 → 전환 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을 2023년까지 완료기로 합의
- ✓ 책임(liability)과 배상(compensation)문제가 아님(15년 COP 결정문)
- ✓ 손실과 피해에 대한 각종 연구, 기술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산티아고 네트워크' 사무국과 자문기구도 설치 합의

• 자원 섹션의 강화 : 새로운 숫자들의 등장

-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연간 4조 달러 투자 필요 (IEA 보고서)
- ✓ 범세계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연간 4~6조 달러 투자 필요
- ✓ 개도국의 NDC에 명시된 지원 요청액은 2030년까지 5.8~5.9조 달러
- ✓ 중앙은행, 민간은행, 기관투자가 등의 참여 명시
- ✓ 파리협정 2.1(c)와 9조간의 보완성 논의 개시 (개도국 자원시스템 개선)⁸

▪ COP 27 분야별 주요결과

- 감축 : 감축 작업프로그램 합의
 - ✓ 2026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행동 강화를 위해 민간도 참여한 대화체 구성, 부문별 및 주제별 감축방안 협의
- 재원 : Post 2025 기후재원목표(NCQG) 논의 개시
 - ✓ 2024년 타결 목표 (재원공여국 확대, 민간 및 혁신재원 동원 등이 쟁점)
- 적응 : 글로벌프레임워크 설립 합의
 - ✓ 범지구적 적응목표 개발을 위한 포괄적 논의 개시
- 정의로운 전환
 - ✓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 작성키로 합의, 매년 각료급 라운드테이블
- 파리협정 6조
 - ✓ 기술지침 일부채택 → 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최소 기반 마련

9

▪ COP 27 계기 국제정세

-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11.8) 선방 → IRA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지속 추진 예상
- 브라질 Lula 전대통령의 당선(10.31) → 산림파괴 중단 발표 등 친기후정책 선언, 2025년 COP30 아마존 개최의사 표명
- 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11.14) → 기후변화 대응 양국간 협력 복원 합의
- G7·인도네시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합의(11.15) →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에 200억불 지원
 - ✓ 베트남, 인도, 세네갈 등 협상중
- G20 정상들의 1.5도 목표 지지 합의 → COP27이 글래스고 수준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 발송

10

■ COP27 의 평가

- 개도국 핵심 관심사 반영 성과 → 개도국 COP
 - ✓ 손실과 피해 정식 의제화 및 기금 설립 원칙적 합의
 - ✓ 적응 및 재원 등 여타 의제에서도 개도국 입장 강력 반영
 - ✓ 감축분야는 선진국의 요구 미반영 → 감축분야에서 글래스고보다 진전을 달성하지는 못한 아쉬움 (글래스고 문안 수준 반영)
 - 선진국은 IPCC 보고서의 2025년 이전 온실가스 배출 정점 도달, 脫화석 연료(석탄, 석유, 가스 포함) 촉구 등 COP26 보다 진전된 감축노력을 주장했으나 결과문서 반영에 실패
- 에너지 및 식량위기 속에서도 정상들의 기후대응 의지 재확인 성과
- 의장국 이집트의 강한 개도국 지원 의지
 - ✓ 개최 이전부터 아프리카 COP, 적응 COP 등 개도국 의제 강조

11

■ COP 27 결과 한국에의 시사점

- **脫화석연료 논의 대응** : 脫석탄, 脫석유·가스, 화석연료보조금 철폐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기 시작
 - ✓ 유럽, 군소도서국은 COP26에서 합의한 석탄발전 완화 및 화석연료보조금 철폐 관련 이행 로드맵과 매년 보고서 제출부터 요구
 - ✓ 글래스고 coal phase-down, fossil fuel subsidy phase-out 에서 더 나아가 fossil fuel phase-out 까지 등장
 - ✓ 남아공 및 인도네시아 JETP 의 핵심도 석탄발전 종식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이를 위해 선진국의 통 큰 지원

↓

국내 석탄발전소,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의 공적금융 투입 등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우리 입장 정교화 필요
- **한국 NDC 국내이행 노력 가속화 및 기업들의 해외 감축 활동도 적극지원** (기후변화협력협정 다수국과 추진중)

12

■ COP 27 결과 한국에의 시사점

- **재원공여국 확대 논의 대응** : 선진국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의 공여국 카테고리는 더 이상 무의미 → 현재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으로 공여국 확대 강력 주장
 - ✓ 1992년 대비 현재 중국 온실가스 배출은 4배 증가, 국민소득은 34배 증가
- 2023년 설립예정 손실과 피해 기금, 본격화되는 Post 2025 재원 논의 과정에서 미국 및 EU는 중국, 사우디 등 거대 경제국의 공여 참여를 적극 개진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은 G20 회원국, 고소득 국가(HIC, 세계은행 기준), 주요경제국, 다배출국가 등 여러 카테고리에 동시 해당
 -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맞는 대응 전략 범정부적 도출 필요 → **그린 ODA 국가브랜드화** 필요 : 가칭 K-Green partnership

13

감사합니다.
Thank you!

14

▶▶ 의제별 주요내용



손실과 피해



정 재 희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행정관

COP27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손실과 피해(Loss & Damage)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정재희 외무행정관

손실과 피해 개념화

(합의된 정의 X)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노력만으로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구분 (현상)	
극한 날씨 현상 (extreme weather events)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 (Slow Onset Ev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뭄 및 홍수 • 열파(heatwave) • 태풍 및 사이클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면 상승 및 빙하의 후퇴 • 사막화 • 생물다양성 손실 • 해양산성화, 토지 산림황폐화
구분 (경제적 영향)	
경제적 손실 (Economic Losses)	비경제적 손실 (Non Economic Lo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운영, 농업생산력 약화 • 인프라 및 자산 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파괴 • 문화유산의 손실



COP27 이전까지의 협상 경과 (문제의 발단)

COP26에서 글래스고 대화(Glasgow Dialogue) 창설 합의

- ✓ 손실과 피해 대응 자원 마련 방안을 논의 (arrangements of funding activities)
- ✓ 당사국, 관련 기관, 이해관계자 포함 (정식의제 x)
- ✓ 2024년까지 총 3차례 개최
- ✓ 최종결과물 활용 방안 내용 없음

제1차 글래스고(GD) 대화 개최(2022.6月, 독일 본)

- ✓ (선진국) 2024년까지 자원 지원체계 논의 위한 유용한 대화체
- ✓ (개도국) 유의미한 결과물 없는 Talk Shop에 불과(정식의제화 주장)



COP27 개막전 의제 채택 협상(Agenda Fight)

G77+중국 COP27 손실과 피해 자원 의제 포함 논의 공식화

- ✓ 2022.6월말, UNFCCC 사무총장 앞 서한 송부
- ✓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자원 전담기구(dedicated financial facility) 창설을 전제
- ✓ 동 기구의 디자인, 운영방안 등에 대한 상세 논의 주장

개막전 48시간 동안 협상 끝에 손실과 피해 자원 의제 채택에 합의

- ✓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자원 지원체계(funding arrangements)에 대해 논의
- ✓ (각주) 결과물은 협력과 촉진에 기반하고, 책임 및 보상은 포함하지 않음

미국 등 선진국, 책임 및 보상과 연계되는 것은 불수용(redline)

- ✓ 2015년 파리협정 결정문에도 책임과 보상과 관계 없다는 문구 포함

유엔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non-annex1) 국가 대상 손실과 피해 규모 추정치

- ✓ 2030년까지 약 2,900-5,800억불 (cf. 2025년까지 기후재원 연간 1,000억불 조성 목표)
- ✓ 2040년까지 약 5,510억-1조불
- ✓ 2050년까지 약 1조 1,320억불-1조 7,410억불

(출처: WRI)

선진국 vs 개도국 입장 차이

손실과 피해 대응 자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접근법 차이

개도국(G77+중국 등 모든 개도국 그룹)	선진국(미국, EU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존하는 손실과 피해 관련 자원 전무 • COP27에서 창설 불발시, 실패한 COP • COP27에서 재원기구 창설 위한 정치적 선언 후 • 2024년까지 필요한 기술적 작업 진행 • 임시기구(Ad hoc committee)를 설립하여 창설 준비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관련 재정메커니즘의 기능을 강화 및 확대하여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GCF, 적응기금, MDBs • 새로운 재원기구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 및 자원 필요 vs 즉각 행동 필요 • 전담 재원 기구 창설은 손실과 피해라는 역동적 이슈를 커버하기에 비효율적

1주차 전문가 협상에 이어 2주차 고위급 협상에서도 고착상태가 11.17.(목) 폐막 전일까지 지속

협상의 분기점: 폐막 전일 23시, Informal Stocktaking



COP27 의장 주제 Informal Stocktaking 진행

손실과 피해 공동장관주재자(질레, 독일) 경과 발표

EU의 새로운 제안 (협상 전략)
- Fund 창설 합의, 공여주체 확대 및 감축 진전 조건



AOSIS, 아프리카 그룹 등 박수와 함께 welcome 행진

개도국 내부 입장차 조정(G77, LMDC, 중국) "이행"의 COP이지,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을 재작성하는 순간은 아님

G77+중국의 범생 입장 재조율

Frans Timmermans EU 집행위 수석 부집행위원장(환경 및 기후변화 총괄) 발언 요약

- ✓ 기후변화 취약국 위한 대응 기금(Response Fund) 창설 조건부 합의
- ✓ (재원) 공여주체 확대(broad donor base), 창의적 재원 소스 마련(levies) (감축) 2025년 peak, NDC 재강화, 1.5도 경로 등

COP27 손실과 피해 자원 의제 최종 결과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Fund) 및 새로운 자원 지원체계 창설(establish)

- (기금 창설) 손실과 피해 대응(responding)을 위한 기금(fund) 창설 결정
- (지원체계 창설) 새로운 자원 지원체계(new funding arrangements)를 창설, 既 존재하는 손실과 피해 재원지원 체계 보완(complement)하는 역할
- (준비위원회 설립) 준비위(transitional committee)를 설립, 내년 총회까지
△기금의 제도적 장치 마련 △재원 원천(source) 확장 방안 등에 대한 제안
* (위원회 구성) 지역 그룹별 배분을 통해 총 24인(선진국 10인, 개도국 14인) 구성
(consensus로 제안 채택)
- (모멘텀 조성) △유엔사무총장 주최 국제 금융기구 및 기관 총회 개최 △COP28 전까지 장관급 행사 개최 등

우리의 시사점

- ✓ 공역주체 확대 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립 필요(반대급부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도 고민 필요)
- ✓ 역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손실과 피해 규모를 줄이는 기본적 수단인 감축)
- ✓ 창의적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항공(aviation), 선박(shipping), 화석연료(fossil fuel)에 부담금 부과 가능성

감사합니다

▶▶ 의제별 주요내용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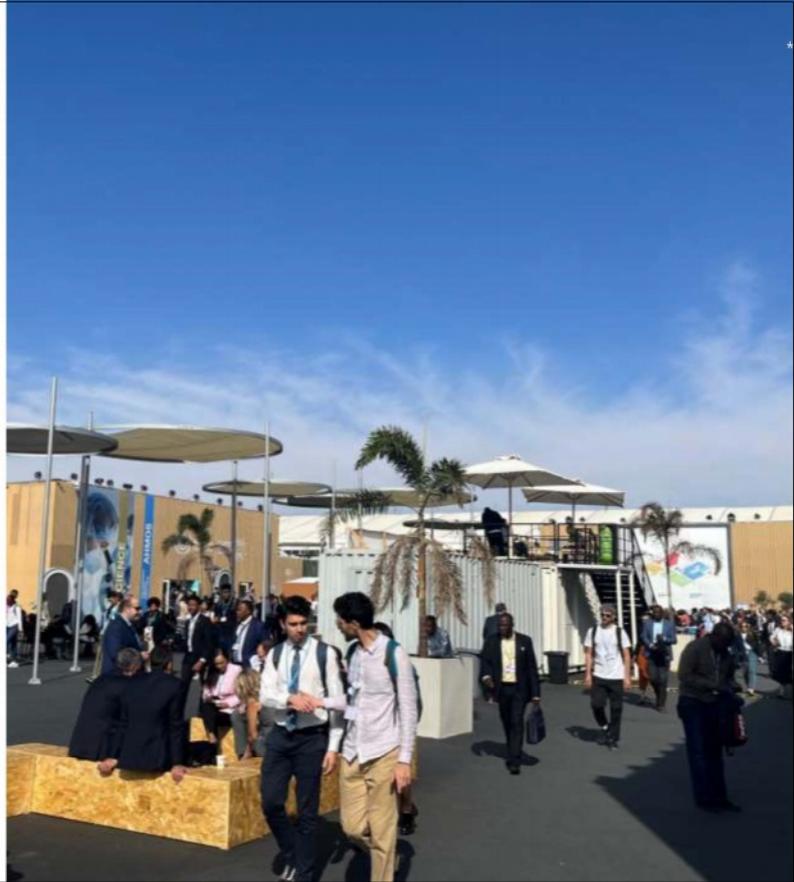
강 주 연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

제27차 UNFCCC
당사국 총회(COP27)

적응 의제
논의 결과 및
시사점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강주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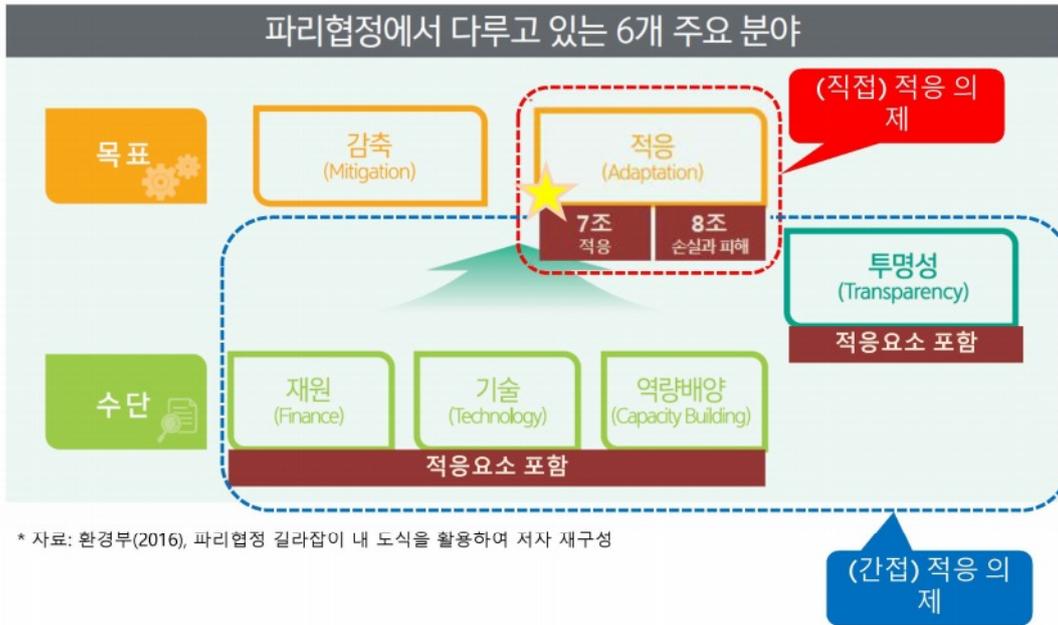
I. UNFCCC COP 27 개요



* 자료: Kiara Worth, UNFCCC 웹사이트

II. UNFCCC COP 27 적응 의제 개괄

1. 적응 의제 범위



II. UNFCCC COP 27 적응 의제 개괄

2. 적응 의제 개괄

	적응위원회(Adaptation Committee: AC)	전지구적 적응 목표 (GlaSS, global goal on adaptation)	최빈국전문가그룹(Least Developed Countries Expert Group)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NAP)
세부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 연간 업무성과 파리협정 관련 기타 적응 업무 추진 현황 AC 진척, 효과성, 성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워크숍 개최 결과 공유 향후 논의방식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G 연간 업무 성과 LEG 절차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P 수립 및 이행 관련 자원 접근성 확대
핵심쟁점	적응 논의 체계 점검 및 신규 적응 논의 체계 도입		국가적응계획 이행에 대한 자원 확대 및 자원 접근성 강화	

Ⅲ. UNFCCC COP 27 적응 의제 논의 상세 결과

1. 국가적응계획 이행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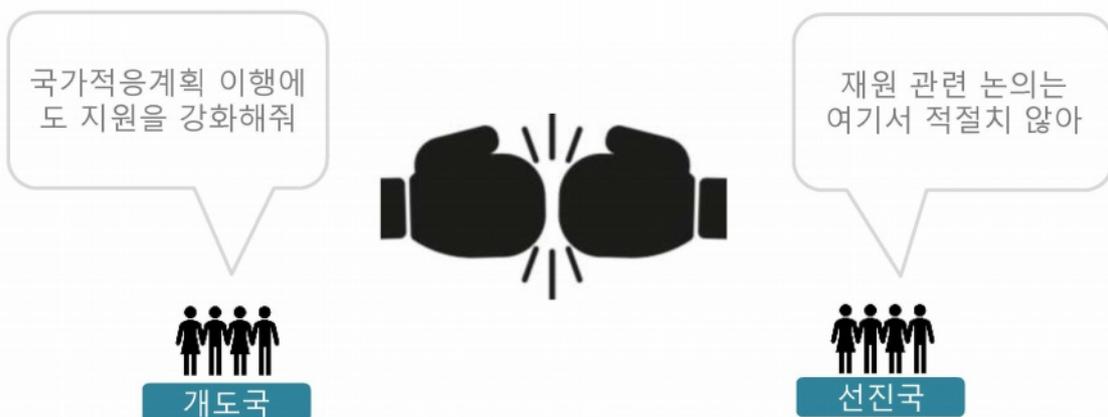
- 국가적응계획(NAP) 개요

분류	내용
연혁	2010 설립
개요	당사국의 중장기적인 적응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하도록 지원하는 수단
파리협정 관련 조항	'각 당사자는, 관련 계획, 정책 그리고/또는 기여의 개발 또는 강화를 포함하는 적응계획 과정과 행동의 이행에 적절히 참여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파리협정 제7조 9항)
특징	2015 COP21 결정문에 따라, GCF NAP 수립 및 이행 지원 가속화 결정

Ⅲ. UNFCCC COP 27 적응 의제 논의 상세 결과

1. 국가적응계획 이행 지원 강화

- 개도국 및 선진국의 주요 주장



Ⅲ. UNFCCC COP 27 적응 의제 논의 상세 결과

1. 국가적응계획 이행 지원 강화

- 논의 결과

*“Requests the Board to **continue to enhance support for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adaptation plans (국가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지원 강화 지속)** to enable developing countries to take effective adaptation action^{(#/CP.27 Report of the Green Climate Fund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guidance to the Green Climate Fund, (GCF 지침 관련 의제))}”*

Ⅲ. UNFCCC COP 27 적응 의제 논의 상세 결과

1. 국가적응계획 이행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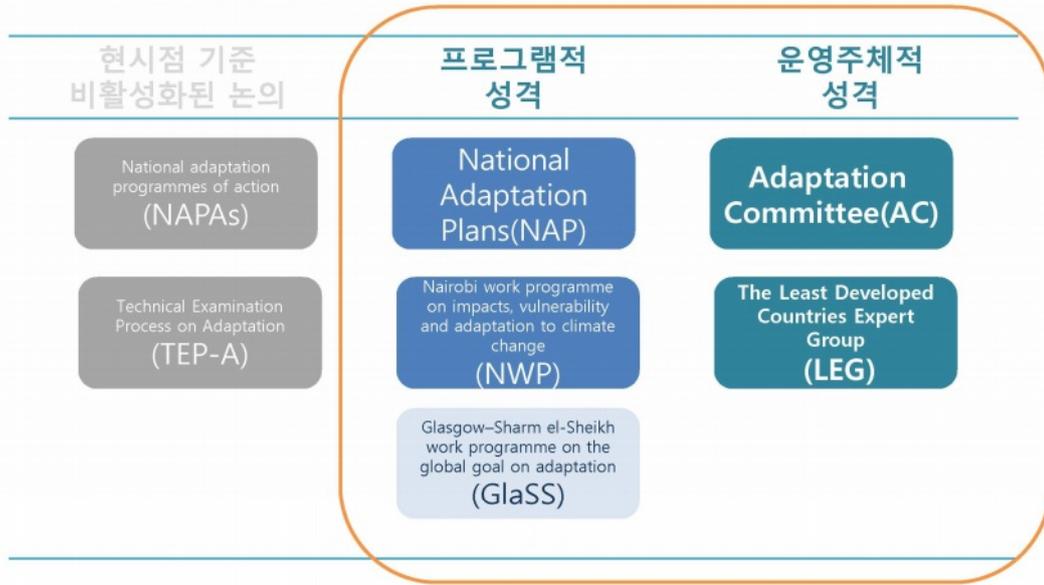
- 시사점



Ⅲ. UNFCCC COP 27 적응 의제 논의 상세 결과

2. 기존 적응 논의 체계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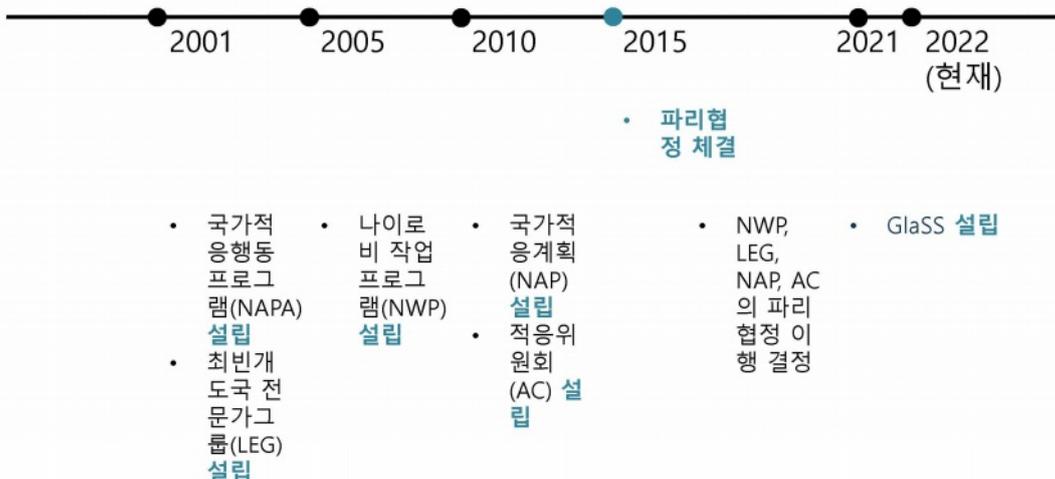
• 적응 논의 체계 개괄



Ⅲ. UNFCCC COP 27 적응 의제 논의 상세 결과

2. 기존 적응 논의 체계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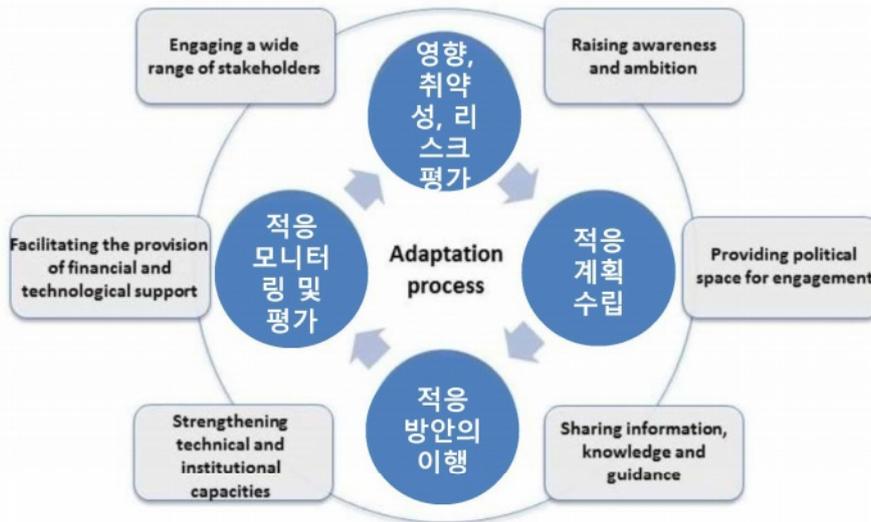
• 적응 논의 체계 수립 연혁



Ⅲ. UNFCCC COP 27 적응 의제 논의 상세 결과

2. 기존 적응 논의 체계의 한계

- UNFCCC 하 적응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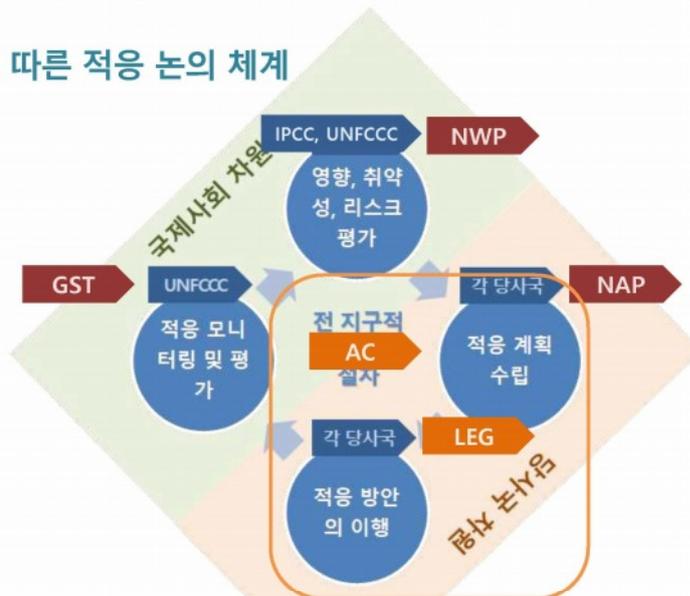


* 자료: UNFCCC 웹사이트 <https://unfcccint/topics/adaptation-and-resilience/the-big-picture/what-do-adaptation-to-climate-change-and-climate-resilience-mean>

Ⅲ. UNFCCC COP 27 적응 의제 논의 상세 결과

2. 기존 적응 논의 체계의 한계

- 주기에 따른 적응 논의 체계



* 자료: 박덕영, 강주연 등(2020), 파리협정의 이해 내 도식을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Ⅲ. UNFCCC COP 27 적응 의제 논의 상세 결과

3. 신규 적응 논의 체계의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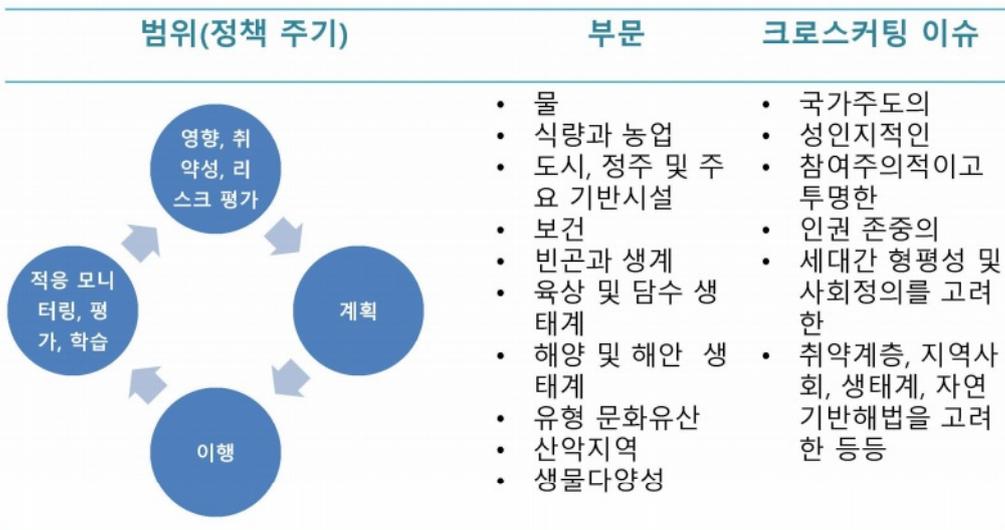
• 전지구적 적응 목표 작업 프로그램(GlaSS) 개요

분류	내용
연혁	2021 설립
개요	전지구적 적응 목표에 대한 임시 작업 프로그램
파리협정 관련 조항	'당사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제2조에서 언급된 기온 목표의 맥락에서 적절한 적응 대응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응역량 강화, 회복력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경감 이라는 전지구적 적응목표를 수립한다.' (파리협정 제7조 1항)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기간의 임시 작업 프로그램 • 연 4회 워크숍으로 구성

Ⅲ. UNFCCC COP 27 적응 의제 논의 상세 결과

3. 신규 적응 논의 체계의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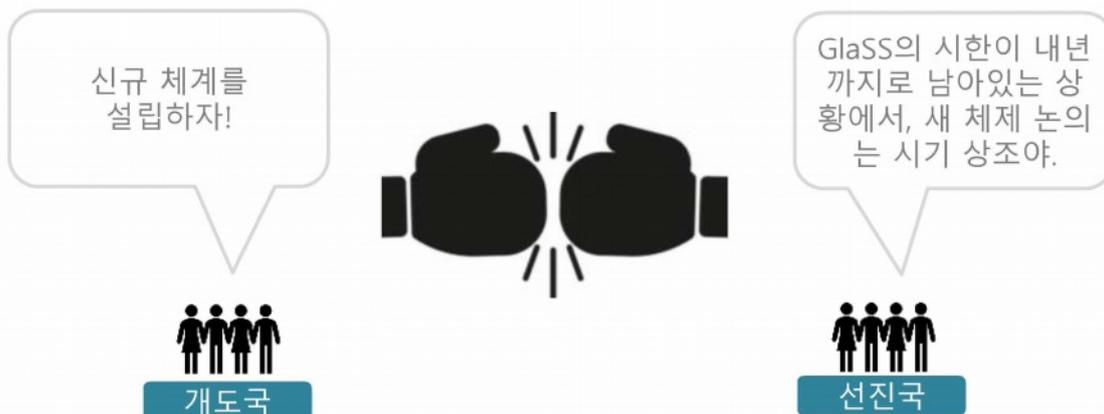
• 신규 전지구적 적응 목표에 대한 체계 제안



Ⅲ. UNFCCC COP 27 적응 의제 논의 상세 결과

3. 신규 적응 논의 체계의 제안

• 개도국 및 선진국의 주요 주장



Ⅲ. UNFCCC COP 27 적응 의제 논의 상세 결과

3. 신규 적응 논의 체계의 제안

• 논의 결과

“8. Decides to ***initiate the development of a framework (체계 설립에 착수)*** for the global goal on adaptation to be undertaken through a structured approach under the Glasgow–Sharm el-Sheikh work programme in 2023...

9. Also decides that the framework referred to in paragraph 8 above will guide the ***achievement of the global goal on adaptation and the review of overall progress in achieving it (전지구적 적응목표 달성과 전반적 진척 검토에 대한 지침 제공)***...

(#/CP.27 Report of the Green Climate Fund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guidance to the Green Climate Fund)

Ⅲ. 시사점

- **신규 ‘전지구적 적응 목표 체계’ 세부사항을 두고 차기 년도 치열한 논의 예상**
 - ‘전지구적 적응 목표’ 작업프로그램이 현재 2년간의 한시적인 프로그램임에 따라, 내년 프로그램 종료 시점을 앞두고 신규 적응 논의 체계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
 - 적응에 대한 선도적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한 한국의 기여방안 고민 필요
- **개도국의 적응 이행 지원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국가적응계획 이행 지원 관련 논의결과와 같이, 적응의제를 통해 기타 이행수단(재원, 역량강화, 기술이전)을 압박하는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의제별 주요내용



감 축



이 수 민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COP27 감축의제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이수민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1. COP27 감축의제 주요결과
- 2.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감축 작업프로그램 (Mitigation Work Programme)





“(CMA 4 agenda item 4) Matters relating to the work programme for urgently scaling up mitigation ambition and implement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7”



COP27 감축의제 목표 및 방향

“COP27 will be a moment for countries to fulfill their pledges and commitments towards delivering the objectives of the Paris Agreement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is year should witness the implementation of the Glasgow pact call to review ambition in NDCs, and create a work program for ambition on mitigation.” - 의장국 Egypt

- COP27은 국가들이 파리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했던 약속의 이행을 논의 하기 위한 회의가 될 것이며, 올해 국제사회는 지난 글래스고 기후합의 이행을 위해 NDC 강화를 검토하고 감축 목표 상향 및 이행을 위한 감축작업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KEEi 2022. All rights reserved.
Page 2

감축 작업프로그램 (Mitigation Work Programme)



“COP27에서는 감축, 적응, 자원 의제가 맞물려 진행”



COP27 감축의제 현황

- (CMA 4 agenda item 4) Matters relating to the work programme for urgently scaling up mitigation ambition and implement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7 of decision 1/CMA.3
- 작년 글래스고 기후합의(COP26)를 통해 2030년까지 감축 의욕성 및 이행을 긴급하게 강화하기(urgently scale up) 위한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자는 의제가 채택
- 이번 COP27에서는 진행방식, 제도적 장치, 범위, 투입 자료 등 등 작업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이 진행

KEEi 2022. All rights reserved.
Page 3

감축 작업프로그램 (Mitigation Work Programme)



“개도국과 선진국 국가그룹 간 첨예한 입장 대립”



주요 쟁점

- (운영 기간) 감축 작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감축부담을 우려하여 일시적 운영(1년)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감축의욕 상향을 위해 2030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선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 (특정 국가의 책임 부각) 다배출국(major emitters), 주요 경제국(major economies) 등 특정 당사국의 책임을 부각하려는 선진국(미국, EU)과 이를 저지하려는 개도국(중국, 인도, 사우디 등) 간 첨예한 입장이 대립
- (부문별 접근법) 산업부문별 감축목표(benchmarks)나 산업표준(industry standards)이 도출될 가능성에 개도국이 강하게 반발
- (논의 범위)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기술지원까지 논의 범위 확산하려는 개도국 요구에 선진국이 강경한 반대입장 견지

감축 작업프로그램 (Mitigation Work Programme)



“감축작업프로그램 출범 확정 -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쉬운 결과”



COP27 총회 결정문 결과

- ‘감축 작업프로그램’을 2023년부터 착수하여 2026년까지 우선 운영하기로 했으며, 별도 대화체(dialogue)를 구성하여 △부문 및 주제별* 감축 방안, △기술, △정의로운 전환 등에 대한 지식과 의견을 공유하고, 매년 결과보고서에 기초해 CMA 결정문을 도출하기로 합의
- * MWP에서 다루지는 부문 및 주제에는 IPCC 의 온실가스 산정 지침에 따른 부문과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작업반 보고서에 제시된 부문별 최저비용 감축 수단 등이 언급
- MWP 대화체에는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산업계, NGO 등)의 참여도 가능한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폭넓은 논의 예상

감축 작업프로그램 (Mitigation Work Programme)



“감축작업프로그램 출범 확정 -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쉬운 결과”



감축작업프로그램 의제 협상 평가

- ‘감축 작업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이 확정되어 동 작업프로그램이 출범함에 따라 당사국의 감축 의욕성 및 이행 강화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 당초 ‘글래스고 기후합의(COP26)’ 에서 보다 후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진전된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 EU, 영국 등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대보다 아쉽다는 평가도 존재
- 감축작업프로그램의 출범으로 감축 관련 당사국 논의가 부문별 감축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로 심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내년부터 진행되는 대화체에서의 논의 준비* 착수 필요

* 제안서를 통해 논의주제를 '23년 2월1일까지 제출하고 선정된 논의주제에 대한 제안서 제출('23년 3월1일)

감축 작업프로그램 (Mitigation Work Programme) – CMA 결정문(상세)



<p>1항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사항(CMA.3. 27항)에 명시된 목적*을 원용하여 위임된 목적 재확인 * 전지구적 이행점검과 보완적 방식으로, 결정적 10년('30년까지, critical decade) 동안 감축 의욕성 및 이행을 긴급하게 강화 	<p>4항 논의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IPCC 2006 인벤토리 지침 상의 모든 부문,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자 그룹 보고서의 주제 영역, ▲ enabling conditions, ▲ 기술, ▲ 정의로운 전환, ▲ 공통 이슈(cross-cutting) 등을 포함
<p>2항 운영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WP는 관점, 정보, 견해에 대한 집중된 의견교환을 통해 작동하며, MWP의 결과는 비규제적, 비징벌적, 촉진적이며 국가 주권 및 국가 상황을 존중 ▪ NDC의 국가결정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목표의 강제적 부과는 불가 	<p>5항 시행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WP의 시행은 제4차 CMA(2022) 이후에 즉시 개시되고, 제8차 CMA(2026)에서 지속 여부를 결정
<p>3항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WP는 NDC의 통보를 위한 절차와 일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능 	<p>6항 거버넌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MA 하에서 운영

감축 작업프로그램 (Mitigation Work Programme) – CMA 결정문(상세)



<p>7항 공동의장 임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B 의장이 제58차 SB('23.06) 이전에 개도국과 선진국에서 각 1인씩 2명의 공동의장을 임명하고 이후 2년마다 임명 절차 진행 	<p>10항 대화체 운영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화체는 관점, 정보, 견해에 대한 집중된 의견교환 및 당사국과 비당사국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
<p>8항 글로벌 대화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2회의 글로벌 대화체를 각 SB 회기에 앞서 진행하고 hybrid(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 	<p>11항 투자 촉진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축 기회 발굴을 위한 자원 흐름의 촉진을 위해 투자에 초점을 둔(investment-focused) 행사를 사무국이 조직하여 대화체 시행 중에 개최
<p>9항 권역별 대화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의장의 재량에 따라 권역별 기후행사에 맞춰 hybrid 방식의 대화체를 매년 개최 	<p>12항 논의주제 취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국 및 비당사국 이해관계자가 제안서를 통해 MWP의 범위에 부합하는 논의주제를 '23년 2월1일까지 제출하고 이후 매년 제출

감축 작업프로그램 (Mitigation Work Programme) – CMA 결정문(상세)



<p>13항 논의주제 취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의장은 제출된 제안서를 고려하여 대화체에서 논의될 주제를 '23년 3월1일까지 결정하고 이후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논의주제 결정 	<p>16항 논의결과 고려 및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B는 연례보고서에 기초하여 진전사항을 고려하고 CMA의 고려와 채택을 위해 결정문 초안을 CMA에 매년 권고
<p>14항 논의내용 취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국, 옵저버 및 비당사국 이해관계자는 선정된 논의주제와 관련한 기회, 우수사례, 행동 가능한 해법, 도전과제 및 장애요인에 대한 제안서 제출 	<p>17항 정치적 절차와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의장은 '23년부터 각료급 연례워킹회의에 연례보고서에 대해 발표를 진행
<p>15항 결과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대화체에 대해 논의주제에 대한 요약, 주요 결과, 기회 및 장애요인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보고서를 취합한 연례보고서 작성 	<p>18항 GST에 결과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ST에 연례보고서를 제공

감축 작업프로그램 의제협상 시사점



“향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감축부문 핵심 프로그램으로 진화 예상”



MWP 논의 시사점

- 1.5°C 목표*와 탄소중립을 위한 2030 NDC 상향·갱신 및 충실한 이행이 필요한 시점
* IPCC(2022)에 따르면 파리협정 1.5°C 목표 달성을 위해 '30년까지 '19년 대비 43% 감축 필요
- 파리협정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당사국들의 목표 상향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한 공동의 노력 필요
- 비규제적이나 당사국들의 감축 의욕성 및 이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incentivize)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감축 작업프로그램 의제협상 시사점



“향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감축부문 핵심 프로그램으로 진화 예상”



MWP 논의 시사점

- 선진국들의 부문별 감축 논의 확대 및 특히 다배출국들 대상으로 감축목표 상향·이행강화 주장과 개도국들의 선결적인 재정 및 기술지원 주장 간의 대립이 지속될 전망
- MWP 관련하여 우리나라 여건을 철저히 고려한 대응이 중요하며 선·개도국간 가교역할이 향후 더욱 중요성을 가질 것임
-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규범 형성에 대응하여 환경적 건전성을 가지되 개도국 적극적 감축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필요



감사합니다.

▶▶ 의제별 주요내용



재 원



강 정 훈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사무관

COP27 재원협상 주요내용 및 쟁점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강정훈 사무관



1 배경

2 주요내용 및 쟁점

1 재원협상 배경

1-1. 재원협상 배경

UN기후변화협약
(‘92)

· 선진국(Annex II)은 개도국들의 기후변화대응시 발생하는 비용을 총당하기 위해 새롭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해야 함

COP16
(‘10)

· 선진국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불을 조성하여 개도국의 기후대응을 지원
· 녹색기후기금(GCF) 설립 결정

COP21
(‘15)

· 선진국의 1,000억불 조성 목표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
· 2025년 이후를 위한 새로운 재원 목표 설정

2 COP27 재원협상 주요내용 및 쟁점

2-1. COP27 재원의제

1. 재원조성 : 장기재원(Long-Term Finance)

- 기존의 매년 1,000억불 조성 목표

신규재원조성(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조성 목표

2. 다자기후기금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 GCF 운영전반을 검토하고 GCF 이사회에 운영지침 부여

적응기금(Adaptation Fund)

- 적응기금 운영전반을 검토하고 AF 이사회에 개선 필요사항 전달

3. 재정상설위원회 : 기후재원 관련 당사국 논의를 지원하는 소위원회

- 기후재원 관련 보고서 발간, GCF 운영지침 초안 작성 등

4. 손실과 피해 기금 : 새로운 재정체계 및 기금 설립

- 준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 구성

2-2. 장기재원

□ 배경

- 선진국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불 조성 약속했고(COP16), 목표기한을 2025년까지로 연장(COP21)
- 현재 선진국들은 재원조성 약속금액에 미달
 - OECD 측정 기후재원 규모(억불): ('16) 585 ('17) 716 ('18) 799 ('19) 804 ('20) 833

□ 주요결과 및 쟁점

- 당사국들은 선진국의 1,000억불 조성 미충족에 유감을 표명
- '25년까지 1,000억불 조성 노력을 지속
- 상당한 양의 적응재원이 적응기금 등으로 유입되어야 함을 강조
- 1,000억불 조성 경과 보고서를 2년 주기로 발간(2024 · 2026·2028)

2-3. 신규 재원조성

□ 배경

- 기존의 매년 1,000억불 조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재원조성 목표 수립을 2025년 이전까지 수립키로 합의

COP21 결정문(para 53, 1/CP.21)

▶파리협정 9조3항에 의거하여 선진국들은 의미있는 완화행동 및 투명한 이행의 배경 하에 2025년까지 기존의 공동 재원조성 목표를 지속하는 것으로 당사국들은 결정하고, 파리협정 당사국회의는 개도국들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와 함께 **매년 1,000억불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공동 목표액을 2025년 이전까지 설정하는 것으로 결정**

- 동 목표를 2024년 말에 수립하는 것으로 결정

□ 주요결과 및 쟁점

- (논의 지속) 2024년에 동 목표가 수립되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2023년 논의에 진전이 필요함을 강조
- (전문가회의) 동 회의에 당사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다자개발은행, 민간영역, 시민사회 등) 참여 독려

2-4. 다자기후기금

□ 녹색기후기금(GCF)

- GCF의 운영성과를 환영
 - * 128개국에서 113억불 규모의 209개 사업을 승인, 114개의 인증기구 승인 등
- '23~'27년 동안의 GCF 운영자금을 위한 제2차 재원보충 개시를 환영
- 사업추진시, 감축과 적응간의 균형을 확보하고 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 작성 및 이행 지원 강화를 요청

□ 적응기금(AF)

- 현재까지 적응기금이 수령한 재원은 12억불이며, 현재까지의 사업승인액 규모는 9.3억불임을 확인
- 총 57개의 인증기구가 승인되었으며, 이사회가 채택한 재원보충전략, 중기전략, 평가정책 등을 환영
- 적응기금 검토 결과, 동 기금의 중요성 및 상대적 강점(comparative advantage)을 인지

2-5. 재정상설위원회

□ 재정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개요

- 당사국들의 기후재원 논의와 재정체계 운영주체(GCF/GEF)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협약 하 부속기구
- 위원회는 총 20인으로 구성(선-개도국 각각 10인)
 - * 우리나라는 '18-'19년 위원직을 수임했으며, 이번 COP27 아태지역 선거회의를 통해 '23년 위원직 확보
- '23년 SCF 포럼은 Financing Just Transition 으로 확정

2-6. 손실과 피해 기금

□ 새로운 재정체계 및 기금 설립

-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대응 지원을 위해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신규 재정체계를 설립
- 신규 재정체계 설립 여건(context) 하에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fund)을 설립

□ 준비위원회 설립

- 신규 재정체계와 기금 설립 관련 세부 운영방안이 포함된 권고사항 작성을 위해 위원회 설립
 - * 총 24개국(선: 10, 개: 14)으로 구성, 아태지역 3개국 배정, 연 3회 이상 회의 개최
- 차기 당사국 총회에 권고사항 상정 예정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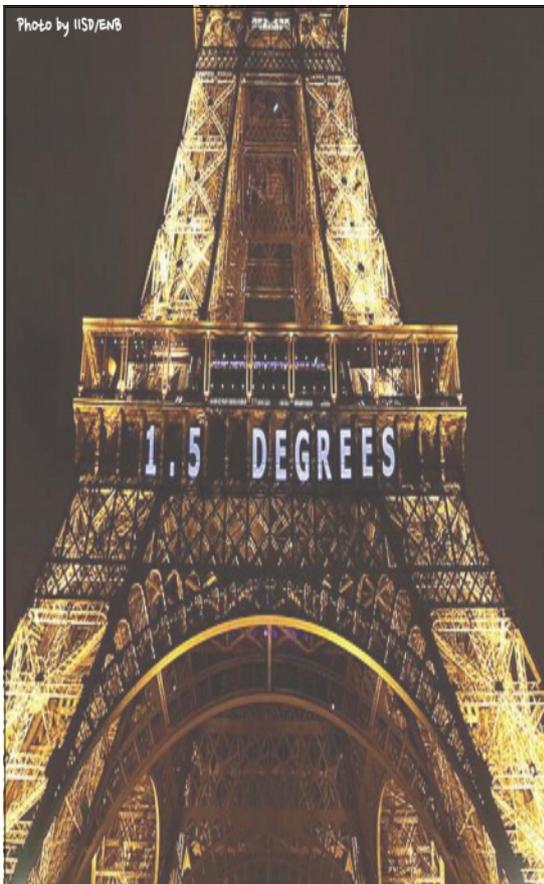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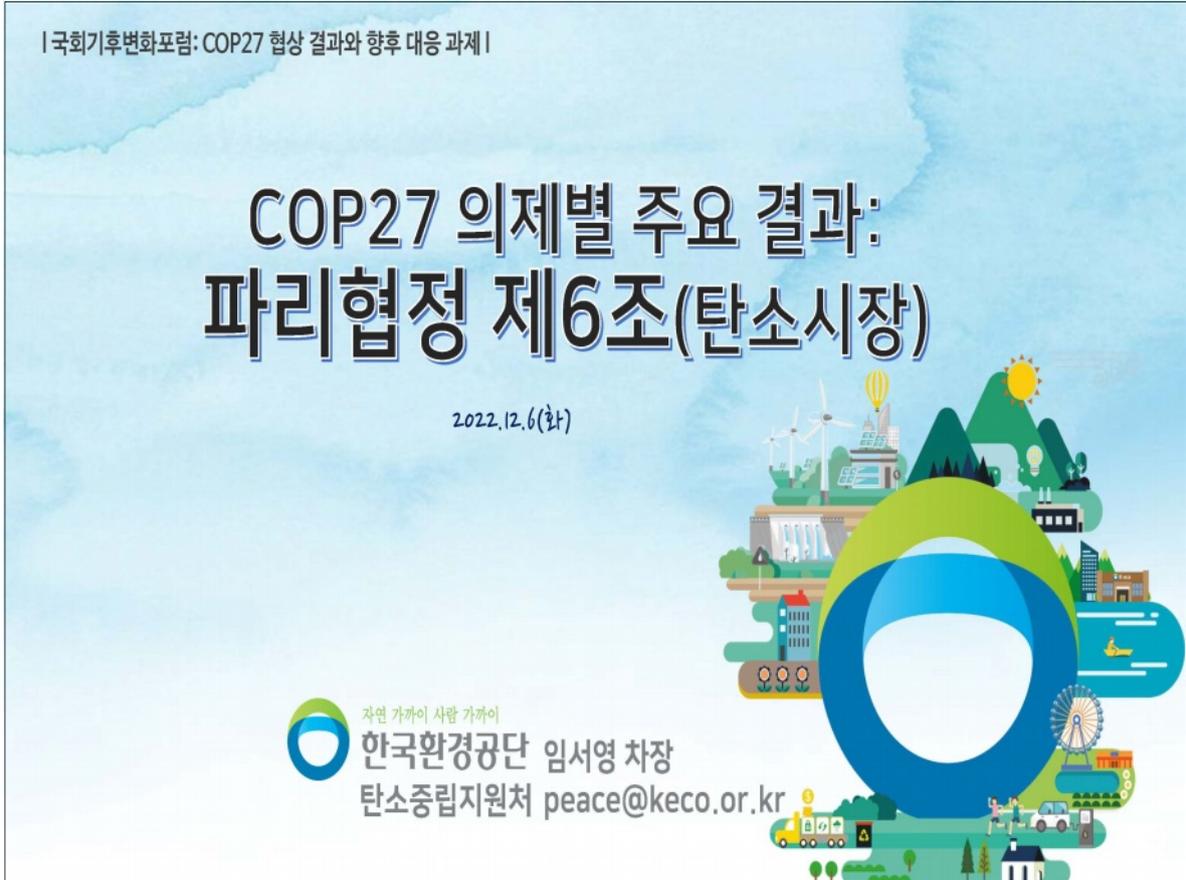
▶▶ 의제별 주요내용



시 장



임 서 영
한국환경공단 차장



☐ 목 차

- 1 파리협정 제6조 후속협상 경과
- 2 COP27 주요 결과
- 3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1. 파리협정 제6조 후속협상 경과

1-1. 파리협정 제6조와 후속 협상 위임사항

파리협정 제6조	(제6.1조, 원칙) NDC 이행에 있어 감축 및 적응 의욕 상향,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건전성 촉진을 위해 당사국간 자발적 협력 선택 가능		
	시장기반 접근법	非시장기반 접근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 (제6조제2~3항)	(제6.4조) 제6.4조 메커니즘 (제6조제4~7항)	(제6.8조) 비시장 접근법 (제6조제8~9항)
	당사국간 자율적이고,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가능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 감독 하의 중앙화된 감축사업 메커니즘	당사국간 협력은 하되, 감축 실적의 이전은 수반하지 않는 활동
제6조 기본지침 (CMA3 채택 결정문)	결정문 2/CMA.3	결정문 3/CMA.3	결정문 4/CMA.3
	지침(guidance) 채택 (ITMO 보고 및 산정 규칙 중심)	규칙·방식·절차(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s, RMP) 채택 (메커니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me) 운영체계 및 논의 주제 등 채택 (협력 사례 공유 등)
추가 지침 (시한: CMA4)	결정문 X/CMA.4	결정문 X/CMA.4	결정문 X/CMA.4
	지침 이행을 위한 추가 규칙 및 절차 (보고서 양식 및 보고표, 시스템 개발 방향, 기술전문가검토 세부 지침 등)	감독기구 운영 절차 등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추가 규칙 및 절차	작업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일정 및 웹기반 플랫폼 개발 방향 등

1-2. 2022년도 파리협정 제6조 후속협상 개발사항

(제6.2조) 협력적 접근법

- 1 최빈개도국(LDC) 및 군소도서개도국(SIDS)의 특별한 여건
- 2 다년도-단일연도 NDC 상응조정 추가
- 3 ITMO에 배출 회피(avoidance) 사업 인정 여부
- 4 보고를 위한 표 및 양식 개발
- 5 제6조 기술전문가검토를 위한 세부 지침
- 6 제6조 관련 시스템(등록부, 제6조 데이터베이스(A6DB), 중앙 산정 및 보고 플랫폼(CARP)) 개발

(제6.4조) 제6.4조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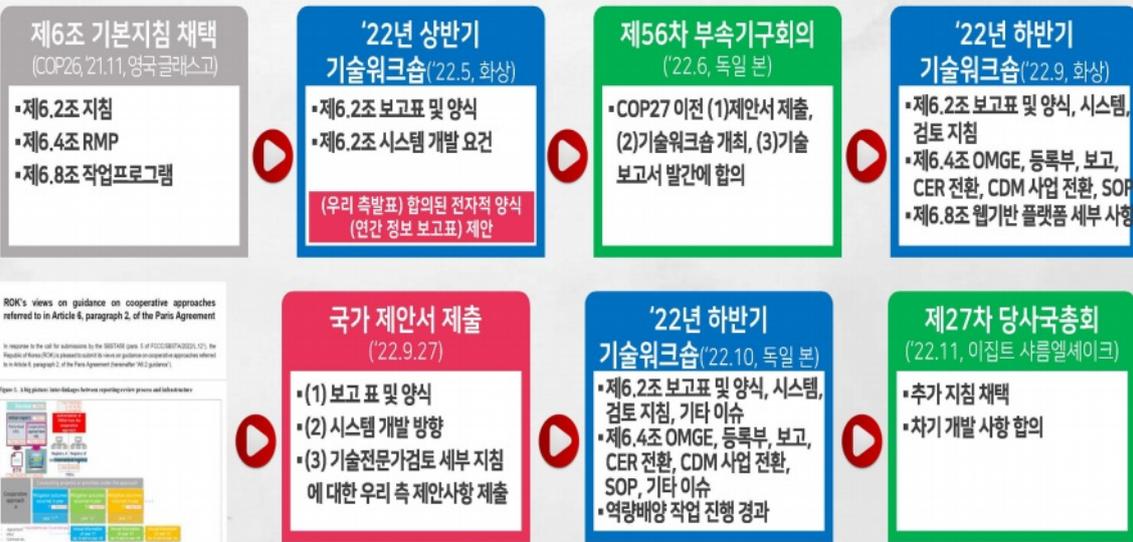
- 1 국가별 제도적 장치(national arrangements) 마련을 위한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SB) 및 유치국의 추가적 책무
- 2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전환 절차
- 3 2021년 이전에 발급된 CDM 감축실적(Pre-2021 CER) 사용을 위한 절차
- 4 유치국에 의한 보고
- 5 메커니즘 등록부의 운영
- 6 행정경비 및 개도국 적응지원 목적의 수익금의 분배(share of proceed, SOP) 이행에 필요한 절차
- 7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OMGE) 이행에 필요한 절차
- 8 제6.4조 사업활동에 배출 회피(avoidance) 및 보존 강화(conservation enhancement) 사업 인정 여부

(제6.8조) 비시장 접근법

- 1 작업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일정(추진 일정, 기대 성과, 웹기반 플랫폼에 대한 세부 사항)

5

1-3. COP27까지의 협상 및 우리 정부 대응 경과



[기타 비공식 회의체 대응 현황]

1. OECD/IEA 주관 "기후변화 전문가그룹(CCXG)" 글로벌 포럼 참석 및 발제('허가' 관련)
2. 유럽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전환에 관한 라운드테이블(ERCST) 주관 비공식 회의 참석 및 발제(보고표, 시스템 등 다수)

6

2. COP27 주요 결과



2-1. COP27/CMA4 결과 총평

● Minimal and robust outcomes

- 파리협정 제6조 이행 및 제6조 활용의 환경건전성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추가 지침 우선 채택

⇒ 미채택 지침 및 세부 지침 필요한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23년부터 후속 협상 지속 예정

⇒ 협정 제6조 3개 하부 조항이 개별 의제로 논의 됨에 따라 후속 개발사항 대비

협상시간 부족, 공식 회기 중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 시급

2-2. 파리협정 제6.2조 협상 결과(1)

- 1 최빈개도국(LDC) 및 군소도서개도국(SIDS)의 특별한 여건 CMA5
- 2 다년도-단일연도 NDC 상응조정 추가 CMA6
- 3 ITMO에 배출 회피(avoidance) 사업 인정 여부 CMA6
- 4 보고를 위한 표 초안 채택 최종본(CMA5) 및 양식 채택 개발
- 5 제6조 기술전문가검토를 위한 세부 지침 채택
- 6 제6조 관련 시스템(등록부, 제6조 데이터베이스(A6DB), 중앙 산정 및 보고 플랫폼(CARP)) 개발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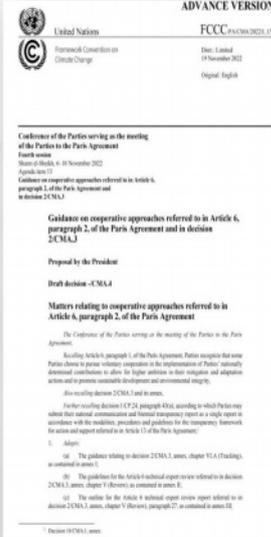
CMA5

- 기밀 정보에 대한 검토 방식
- 제6조 기술전문가검토 결과에 따라 불일치성 확인시 당사국의 대응 방법 및 미대응시 조치 방안
- 초기 보고서-초기 보고서의 검토-연간정보표 제출 순서 및 시점
- 허가의 변경 등 허가 관련 세부 절차
- NDC 및 다른 목적으로 허가된 감축실적에 대한 최초 이전 시점의 적용
- 정례 정보표에 포함될 제6.2조 지침 제23.(j)항에 따른 사업별 연간 정보표 양식
- 연간 정보표에 비온실가스 산정단위 ITMO에 대한 전환방법 포함시의 영향
- 연간 정보의 불일치성 식별, 통지, 수정 절차
- 제6.2조 국제등록부가 제6.4조 메커니즘 감축실적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기능 및 절차
- 제6.2조 국제등록부의 계좌 및 국제등록부 관리자의 역할
- 제6.2조 국제등록부에 당사국이 정보를 제출하는 절차
- ITMO 추적을 위한 고유식별기호 부여를 위한 공통의 명명법(common nomenclature)

2-2. 파리협정 제6.2조 협상 결과(2)

결정문 X/CMA.4

적용 원칙, 동 회기 결정 사항, 차기 이관 및 논의 필요 사항 등




부속서(개별 추가 지침)

- 1 제6.2조 시스템 개발 방향
 - (개발 시한) 국제등록부는 '24년까지 / CARP 및 A6DB는 '24.6월까지 시험버전, '25.6월까지 최종버전 공개
 - (등록부) 각 국에서 개발/관리할 국가 등록부와 국제등록부 데이터 자동 연계는 당사국 희망시 연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예정
- 2 제6조 기술전문가검토 지침
 - (검토 대상) 참여 당사국별 제출 정보 및 제6.2조 지침과의 일지성(consistency) 모두 검토
 - (검토 대응) 당사국은 기술전문가검토에 성실히 임해야 하고, 검토 결과 확인된 불일치성(inconsistency) 미대응 시, 해당 내용 CARP를 통해 공개
- 3 제6조 기술전문가검토 보고서 양식
 - (1) 개요 및 요약
 - (2) 기술검토 결과(제출 정보의 일지성 확인 결과, 역량배양 필요 사항 식별 및 권고, 당사국이 해결하지 못한 이전(previous) 검토에서의 권고사항)
 - (3) 결론 및 권고
 - (부록) 검토 기간 중의 문서 및 정보
- 4 제6조 기술전문가검토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 (일정) UNFCCC 사무국이 훈련프로그램(안)을 '23.12월 까지 마련 예정 (초기 보고서 검토 우선 실시)
 - (실시) 모든 훈련 과정은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전문가는 매 과정별 시험 응시 필요
- 5 초기 보고서(initial report) 양식
 - (국가 수준 정보) 참여 요건, NDC에 대한 설명, ITMO 산정단위, 상응조정 방법, NDC 정량화 방법
 - (검급법별 정보) 개별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정보(허가 증명 자료, 사업 기간, 참여기구, 예상감축량, 환경건전성 입증 등)
- 6 정례 보고서(regular information) 양식
 - (국가 수준 정보) 참여 요건, 초기보고서의 갱신 사항, 사용 목적별 ITMO 허가 관련 정보, 최신보고대상 기간 동안 상응조정 적용에 관한 정보, 허가한 ITMO가 추가 이전/취소/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
 - (검급법별 정보) 개별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정보(사업 기간, 참여기구, 예상감축량, 환경건전성 입증 등)
- 7 합의된 전자적 양식 초안 주요 내용
 - (표.1) 제목(보고서 제출 당사국명 및 보고당연도)
 - (표.2) 업무 행위(action) 기반 연간 정보 보고표
 - (표.3) 기밀 보유수량(holdings) 연간 정보 보고표

[참고] 초기 보고서(initial report)

- **(제출 시한)** 협력적 접근법으로부터의 ITMO 허가 이전(no later than authorization of ITMOs from a cooperative approach) 또는 차기 격년투명성보고서 제출시
- **(구성)** (1)참여 당사국에 관한 정보, (2)개별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정보(추가시마다 초기 보고서 갱신 제출 필요)

참여 당사국 정보

- I. 참여 요건 충족여부
 - 협정 당사국, NDC 제출 및 유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제6.2조 활용이 자국 NDC 및 LEDS에 기여 여부 등
- II. NDC에 대한 설명
 - 목표치, 목표 및 기준연도, 이행기간, 포함 부문 및 온실가스, ITMO 활용의향 등
- III. ITMO 산정단위(metrics), 상응조정 방법, NDC 정량화 방법

제6.2조 참여 당사국(정부) 준비사항

개별 협력적 접근법 정보

- IV. 개별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정보
 - 참여 당사국에 의한 허가 사본
 - 협력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description)
 - 협력적 접근법의 기간(duration)
 - 기간 동안의 연간 예상 감축량
 - 참여 당사국
 - 참여 기구(참여 당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구)
 - 협력적 접근법의 환경건전성 입증 여부
 - 협력적 접근법에 대한 추가 정보

제6.2조 참여 기구(authorized entities) 준비사항

11

2-3. 파리협정 제6.4조 협상 결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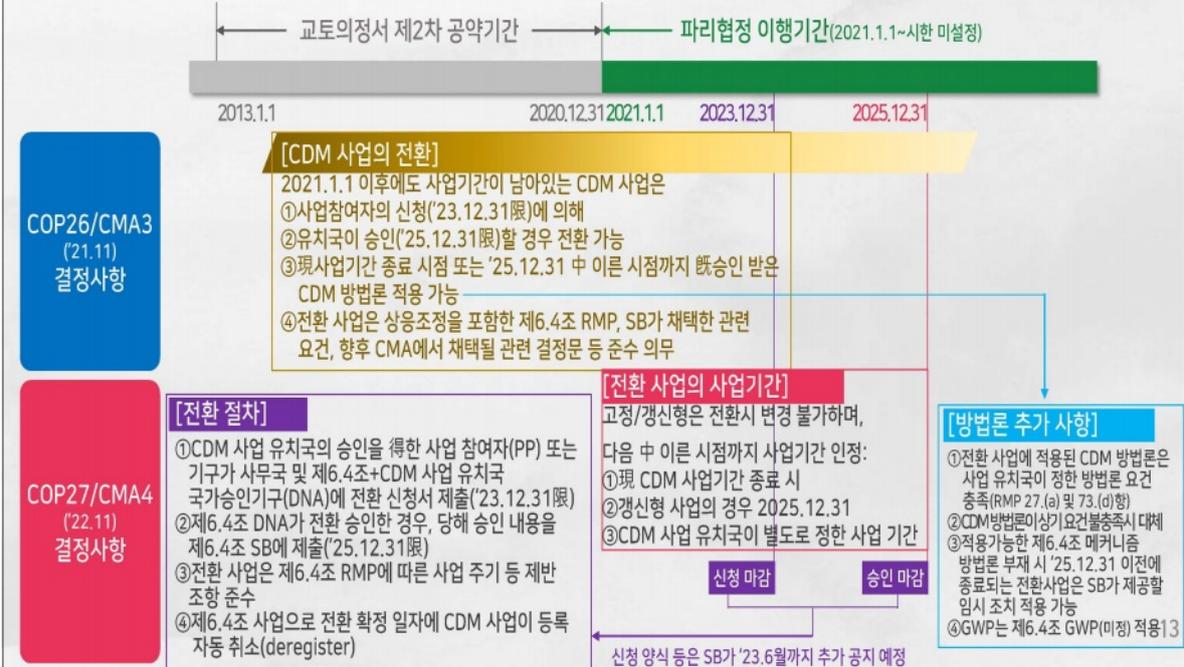
- 1 국가별 제도적 장치(national arrangements) 마련을 위한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SB) 및 유치국의 추가적 책무 **CMA6**
 - 2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전환 절차 **채택**
 - 3 2021년 이전에 발급된 CDM 감축실적(Pre-2021 CER) 사용을 위한 절차 **채택**
 - 4 유치국에 의한 보고 **채택**
 - 5 메커니즘 등록부의 운영 **채택**
 - 6 행정경비 및 개도국 적응지원 목적의 수익금의 분배(share of proceed, SOP) 이행에 필요한 절차 **채택**
 - 7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OMGE) 이행에 필요한 절차 **채택**
 - 8 제6.4조 사업활동에 배출 회피(avoidance) 및 보전 강화(conservation enhancement) 사업 인정 여부 **CMA5**
- CMA5**

 - 제6.4조 메커니즘 등록부와 제6.2조 국제등록부 및 기타 등록부와의 연결 방안
 - 제6.4조 사업 유치국이 감독기구(SB)에게 제6.4조 감축실적(A6.4ER)의 사용목적별 허가 관련 사항 및 이의 변경 등에 대한 정보 제출 방법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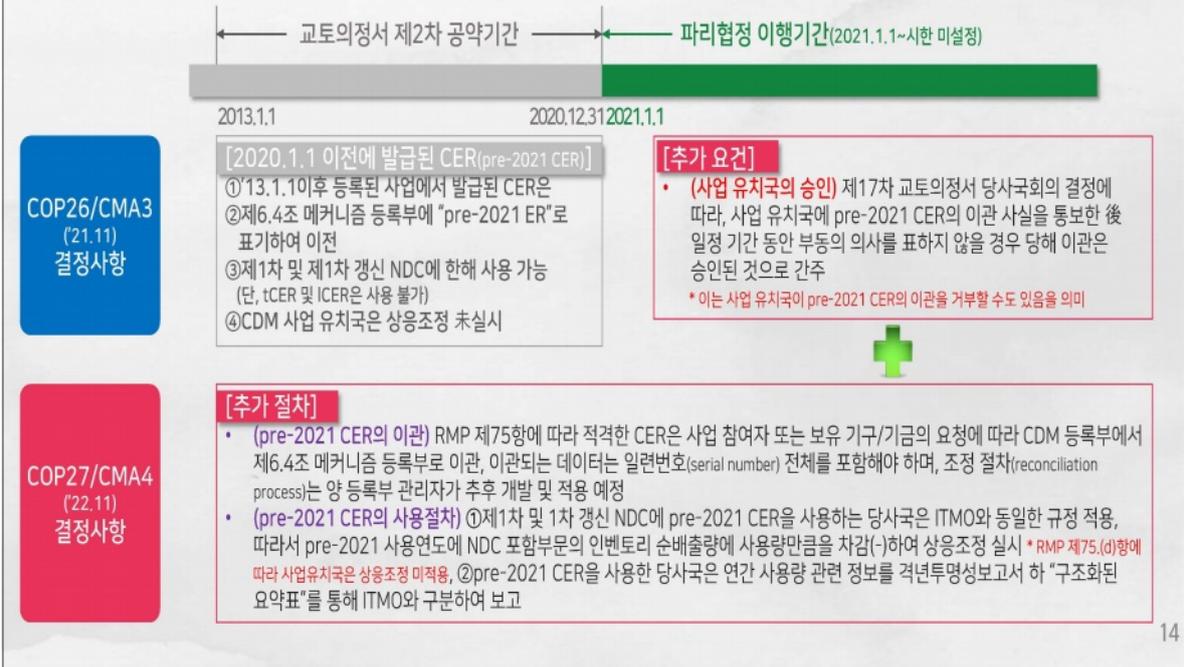
2-3. 파리협정 제6.4조 협상 결과(2)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전환 사용 절차



2-3. 파리협정 제6.4조 협상 결과(3)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전환 및 pre-2021 CER의 사용 절차



2-3. 파리협정 제6.4조 협상 결과(4)

행정경비 목적의 수익금의 분배(SOP) 이행에 필요한 절차

- (행정경비 SOP) ①사업 등록비(registration fee), ②CPA 추가비(inclusion fee), ③A6.4ER 발급비(issuance fee), ④사업기간 갱신비(renewal fee), ⑤등록 후 변경 요청비(post-registration change fee)로 구성
[행정경비 명목의 SOP 부과 요율]

구분	부과 기준(연간 예상감축량)	요율
①사업 등록비	15,000tCO ₂ eq이하	최대 2,000USD
	15,001~50,000tCO ₂ eq	최대 6,000USD
	50,000tCO ₂ eq 초과시	최대 12,000USD
②CPA 추가비	건당	최대 1,000USD
③A6.4ER 발급비	A6.4ER당	최대 0.20USD
④사업기간 갱신비	①사업 등록비 및 ②CPA 추가비 요율 동일하게 적용	
⑤등록 후 변경 요청비	건당	최대 2,000USD

※ 최빈개도국(LDC) 및 군소도서개도국(SIDS) 유치 사업은 상기 SOP 면제 / SB의 결정에 따라 상기 요율 변경 가능
 ※ 개도국 적용 지원 목적은 이미 RMP 제67.(a)항에 따라 발급시 A6.4ER 발급요청 수량의 5% 공제키로 결정, 행정경비 잉여분 등에 대해서는 SB가 검토 후 주기적으로 적용 기금으로 이관 예정

15

[참고] COP27/CMA4 추가 지침 확인 방법

[현재 기준] <https://unfccc.int/cop27/au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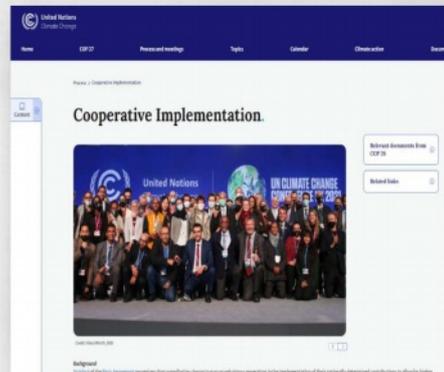
Home	COP 27	Process and meetings	Topics	Calendar	Clim
		and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developed countries		
		Annual technical progress report of the Paris Committee on Capacity-building for 2022	Report of the forum on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response measures		
		Matters relating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제6.2조 Guidance on cooperative approaches referred to in Article 6, paragraph 2, of the Paris Agreement		
		Report of the forum on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response measures	제6.4조 Guidance on the mechanism established by Article 6, paragraph 4, of the Paris Agreement		
		Second periodic review of the long-term global goal under the Convention and of overall progress towards achieving it	제6.8조 Work programme under the framework for non-market approaches referred to in Article 6, paragraph 8, of the Paris Agreement		
		Intermediat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gender action plan	Report of the committee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and promote compliance referred to in Article 15, paragraph 2, of the Paris Agreement		
		Dates and venues of future sessions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matters from SBI 56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matters from SBI 57			

[결정문 연번 확정 후]

UNFCCC 누리집(unfccc.int) 접속 > "Documents and decisions" > "Decisions"로 필터 후 결정문 연번(X/CMA.4) 입력하여 검색

[파리협정 제6조 전용 웹페이지]

<https://unfccc.int/process/the-paris-agreement/cooperative-implementation>



협정 제6조 관련 결정문, 논의 경과 등 확인 가능

16

3.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3-1. 국내적 준비 필요사항

- (제6.2조) △이번에 채택된 보고 양식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등 보완 필요, △우리 정부 참여 협력적 접근법 中 ITMO의 최초 허가 이전에 초기 보고서 제출을 위한 제반사항(상응조정 방법 결정 및 경로방식 선택시 대비 경로 설정 등) 준비 필요, △ITMO 취득 後 격년투명성보고서 內 제6조 참여 정보 적시 보고를 위한 제반 준비 필요, △제6조 기술전문가검토 수검 준비(우리가 추진한 협력적 접근법의 환경건전성 및 지속가능발전 입증 포함) 필요, △후속 협상은 실무 협상으로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탄중법 시행령 제38조)에서 대응 필요 등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등

- (제6.4조) △국가승인기구(DNA) UNFCCC 통보, △사업 유치여부 판단하여 유치국이 제출해야하는 보고 사항 등 작성 및 제출 필요, △우리나라 유치 CDM 사업 전환 신청 대비 필요, △(CDM 사업 참여자) 제6.4조 사업으로 전환 희망 시 시한 內 신청 등
- (제6.8조) 개도국 NDC 이행 지원을 위한 비시장 기반 협력 사업 사례 수집 및 제6.8조 논의 시 적극 홍보 등

패널

- | 노동운 한양대학교 교수
- | 이해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 진윤정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 | 정재혁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사무관
- | 박연정 고려대학교(포럼 COP27 대학생 참관단원)

패널토의 1

노동운 | 한양대학교 교수

이번 제27차 기후변화총회는 최빈국으로 상징되는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에서 개최된 만큼 적응 기후변화총회라는 말이 많았다. 이런 주장과 같이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원지원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개도국들이 만족한 기후변화총회이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또한 적응과 관련된 재원 논의도 많았던 것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유엔에서 적응 논의가 이루어지면 항상 재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이는 재원 기여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 같다.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우리나라가 부속서 I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도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파리협정에 들어서면서 부속서 I 국가는 선진국, 비부속서 I 국가는 개도국이라는 논리가 약해지고 말았다. 기후변화협약이나 교토의정서에서는 부속서 I 국가(Annex I)와 비부속서 I 국가(non-Annex I)라는 표현과 선진국(developed country)과 개도국(developing country)이라는 표현이 혼재되어 사용되었으나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표현만 사용되고 있다. 파리협정은 국가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국제협약이라고 하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원을 공여해야 하는 실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국가 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행동을 적응이라고 정의한다면 개도국으로서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재원지원을 요구할 것이 당연할 것 같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지한 우리나라로서는 재원 공여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도국에 대한 재원 공여를 국외감축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원지원을 국외감축과 연계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없고 감축비용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비용 효과적인 국외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파리협정 제6.2조의 협력적 접근법은 6.4조의 지속가능개발 메커니즘에 비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허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국외감축실적(ITMO)은 실질적(real)이고 추가적(additional)이며 검증 가능(verifiable)해야 한다는 성격이 규정되어 있지만 양국간 협의에 의한 감축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여건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2조를 활용하여 유연성의 범위에서 국외감축을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후변화총회의 감축프로그램(MWP)에서는 주제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부문별 감축방안이 주제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구분을 중심으로 논의하지는 방안과 IPCC의 인벤토리 분류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방안 모두 주제 선정의 범위로 포함되

어 있지만 6차 평가보고서의 구분을 따르는 것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에너지(공급)부문, 수요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 감축경로, 기술과 국제협력 등의 부문별 논의를 진행하면서 감축기술과 전략 및 정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대안을 보다 분명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축 프로그램에서 EU를 중심으로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을 요구한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감축 프로그램의 논의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기술을 시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정책이나 조치, 그리고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부문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에 대한 논의가 부문별 감축목표(target, benchmark) 설정으로 연계되는 것은 경제할 필요가 있겠지만 국제협력으로 연계되어 기술이전과 자원 지원까지 포괄할 수 있다면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부문, 특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에너지 효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면 철강 톤당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부문별 논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과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부문별 접근방식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으면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는 중국과 같은 국가의 감축노력을 유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협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일 수 있다.

파리협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차 지구적 이행점검(GST)이 2021년 12월의 제3차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3)에서 시작되어 2023년 11월 제5차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5)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구적 이행점검에서는 감축 뿐만 아니라 파리협정이 포함하고 있는 적응, 자원, 기술, 능력형성, 손실과 피해 등의 모든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축을 가장 비중있는 주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감축 프로그램(MWP)에서 논의된 내용을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감축 이외의 주제에 너무 비중이 가지 않도록 논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파리협정의 장기 지구온도목표(1.5℃) 달성을 논의하면 자연스럽게 탄소예산(carbon budget,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번 회의에서 과거의 누적 배출량을 고려하여 잔여 탄소예산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누적 배출량을 고려하면 선진국은 배출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누적 배출량에 대한 언급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패널토의 2

이혜경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 글에서는 최근 기후변화 관련 국제 논의 동향 관련 주요 이슈들에 비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공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JETP)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공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JETP)은 개도국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화석연료 중심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민간 협력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공공부분 지원은 참여하는 선진국의 재원으로, 민간 부분 지원은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제26회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에서 결성된 글래스고탄소중립금융동맹(Glasgow Finacial Alliance for Net Zero)에 참여한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발족한 공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JETP)은 2021년 제26회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 발표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너지전환파트너십”이며, 2022년 제27회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프랑스·독일·영국·미국·유럽연합 등의 공공 자금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총85억 달러규모의 투자계획이 소개되었다.

두 번째 공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JETP)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회의에서 발족한 “인도네시아 에너지전환파트너십”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에 미국·일본·캐나다·유럽6개국 등의 공적 자금 100억 달러와 민간 자금이 100억 달러로 총 200억 달러가 향후 3년~5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이로 인하여 인도네시아는 2060 탄소중립 목표 및 전력부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 공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 대상 국가로 베트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제사회 재정지원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참여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나 산업계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국제적인 탄소중립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도국의 공정한 전환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친환경 사업의 기회들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공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패널토의 3

진윤정 |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2022년 11월 6일~20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된 COP27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를 핵심 성과로 한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최종합의문으로 채택하였으며, 감축, 적응, 재원, 시장 등 협상 분야별 크고 작은 성과를 도출하였음.

이 중 산업계가 주목해야 할 COP27 최종 합의의 주요 쟁점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였으며, 이것이 산업계에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함.

①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 민간 참여 및 Sectoral Approach의 강화

- ‘26년까지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이행을 위해 감축작업프로그램(Mitigation Work Program)을 운영하기로 결정, 민간도 참여하는 대화체로 부문별 접근방안(Sectoral Approach) 논의를 포함
- Sectoral Approach는 EU에서 ‘21년 COP26에서 제안한 Breakthrough Agenda*와도 맥락을 같이 함.
 - * Breakthrough Agenda: COP26 시 발전, 교통, 철강, 수소, 농업분야의 청정기술 개발/확산을 통해 2030년 감축이행을 목적으로 한국 등 47개국이 서명
- Sectoral Approach의 핵심은 선·개도국의 구분 및 차별 없이 부문·업종별 에너지·온실가스 효율성을 비교·평가하여 감축기술/수단을 이전·확산하고 섹터레벨의 감축이행을 촉진하는 데에 있음.
- 이는 부문·업종별 중단기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는데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나, 한편으로는 선진국에 유리한 부문·업종별 에너지·온실가스 배출기준 적용, CBAM(탄소국경조정) 등과 연계한 무역장벽화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
- EU는 강한 의지 및 충분한 정책 검토를 거쳐 동 접근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됨. 국가/지역별 여건과 부문·업종별 유불리 발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입장 정리 후 동참 결정이 필요할 것임.
- 기후협상 대화체 내 민간 참여가 이루어지고, 산업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Sectoral

Approach 등의 논의가 포함되는 바, 향후 민관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협상안 마련 등이 더욱 중요할 것임.

② 국제 탄소시장(Market) - 국가간 양자협정 제도 등 구체화

- COP27에서는 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 CDM(청정개발체제)에서 SDM(지속 가능개발체제)으로 전환 지침 등 국제 탄소시장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기술지침 일부가 채택됨.
- 우리나라 정부는 2030 NDC 달성을 위해 해외감축 33.5MtCO₂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2030 감축경로 설정에 따라 해외감축 필요량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국제 탄소시장의 전략적 활용이 매우 중요함.
- 현재 기업들의 해외 감축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상응하는 국제감축 실적(ITMO)을 기업과 정부가 회수하여 기업은 상쇄배출권, 정부는 NDC 이행에 활용하는 제도를 마련 중임.
- ITMO의 국내 활용은 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가 가진 유동성 부족과 가격 급등락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향 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ITMO 확보사업은 기후재원/기금활용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함. 우리나라가 사무국 유치 등 적극적 역할을 했던 GCF의 경우, 전체 프로젝트 209개 중 한국 프로젝트는 1개에 불과함. 국내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재원 공여도 중요하나, 실익확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예: 일본 JCM 추진 시 ODA 활용 등)

③ 정부/민간 기후행동의 투명성(Transparency) 강화

- 국제 기후협상에서 민간부문의 참여와 영향력이 확대되고, 기업들의 기후행동(Climate Action)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투명성(Transparency) 요구도 강화되고 있음.
- UN High-Level Expert Group에서는 COP27 기간 중 넷제로 선언의 그린워싱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기후행동의 투명성&진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10개의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함.

* United Nations' High Level Expert Group on the Net Zero Emissions Commitments of Non-State Entities, "Integrity Matters: Net Zero

Commitments by Businesses, Financial Institutions, Cities and Regions”,
2022.11.8.

- 기후행동의 투명성 강화 노력은 산업계의 자발적 이니셔티브, 정보공시 및 표준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WBCSD에서는 Scope 3(공급망 배출량) 데이터 투명성 강화를 위한 PACT(Partnership for Carbon Transparency)를 추진 중이며, ISSB의 IFRS S2 기후공시 기준 및 주요국의 ESG 정보 공시 의무화, ISO의 Net Zero Guidelines('22.11.10. 발간) 등도 대표적인 활동임.
- 기업의 기후행동은 이제 약속(Commitment)이 아닌 행동(Action)으로 평가되고 있음. 신뢰성 있는 데이터와 현실적인 이행계획이 뒷받침 된 탄소중립 이행전략 수립과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함.

패널토의 4

정재혁 |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사무관

1. COP27 협상 결과

□ (UN기후협상의 Landscape 전환) 본격적인 제1차 NDC “이행”에 접어들면서, COP27 계기 UN기후협상의 중심 아젠다가 각국의 자발적인 목표가 기 수립·완료된 “감축”에서 “적응”과 “이행수단(지원)”으로 전환

※ (고려 필요사항) NDC는 감축을 의미하는가? 파리협정 제3조와 제4조는 무엇이 다른가?

○ (감축) ▲파리협정이 타결된 2015년 COP21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Rulebook)이 타결된 2018년 COP24 ▲글래스고 기후합의가 타결된 2021년 COP26까지 그간 기후 변화 협상은 선진국의 관심사인 ‘감축(mitigation)’ 이슈를 중심으로 항상 진전된 성과 거양

- 특히,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협상 과정은 INDC, 제1차 NDC, NDC 갱신 등 NDC를 최초로 제출하고, 갱신 및 강화하는 절차

※ 2018년 10월, IPCC 1.5도 특별보고서 : 205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순배출제로(0) 달성

- NDC를 상향하도록 권고한 것인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도록 권고한 것인가?

- COP21 결정문에 따라 공식적인 첫 번째 NDC 제출 마감 기한은 2020년말로 종료 / 실질적으로 각 당사국은 차기 NDC 제출 이전까지 기존 NDC를 재차 갱신·강화하기 어려운 현실

- 즉, 파리협정의 “상향식(Bottom-Up)” 체계하 NDC의 국가주권 또는 국가결정성 존중이라는 특성은 5년 주기의 NDC를 더 자주 갱신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선진국 협상 카드의 제약으로 작용

- 금번 총회에서 선진국은 지구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해 ‘2025 이전 온실가스 배출 정점 도달’, ‘脫화석연료 촉구’ 등 작년 COP26보다 진전된 감축 노력을 요구했으나 유의미한 성과 미달성

○ (적응 및 이행수단) 2015년~2021년 사이 적응 및 이행수단 관련 협상 의제는 눈에 띄는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명확한 성과 미달성

- 선진국은 워크숍, 기술대화 등 개선을 통해 의견 교환을 유도하면서 협상의 성과 도출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합의된 목표 달성 실패

- 특히, 선진국은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불 달성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협상과정에서의 신뢰 추락 → 협상력 약화
 - ※ 아울러, 선진국은 칸쿤 플레지(Cancun Pledge)하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미달성 및 교토의정서 2차 의무기간 미이행 등 Pre-2020 감축과 관련해서도 개도국의 불신 초래
- 국제사회의 감축 지연 및 실패로 지난 8월 국토의 1/3이 물에 잠기는 홍수를 겪은 파키스탄과 같은 자연재해 사례가 더 빈번하게 발생되고 피해 강도도 올라가면 갈수록 적응, 손실 및 피해, 재원 지원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
- 특히, 2024년말까지 예정된 신규재원목표(NCQG) 협상이 개도국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 2024년 12월~2025년 2월간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차기 NDC의 목표 강화에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
- 즉, 대다수 개도국의 NDC 목표 및 이행 강화를 위한 재원, 기술, 역량배양 등 이행수단(지원) 확대가 불가피해질 것

2. 향후 대응 과제

- (2대 대응 과제) 우리나라는 ①감축과 ②재원(적응 기금, 손실 및 피해 기금 포함) 협상 의제에 있어서 2가지 도전과제 대두 / 우리는 2개 사안에 대해 어떤 진전을 보일 것이며, 여타국을 견인할 것인가?
 - ※ COP27 2주차 고위급 협상에서의 패키지 딜 협상 의제
 - ①감축작업프로그램(MWP) ②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프로그램(적응) ③손실과 피해를 위한 재원 지원체제
 - (감축: NDC에서 석탄으로) 글래스고 기후합의에 이어 脫석탄, 脫석유·가스,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가 기후변화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준비 필요 → 국내 정책 뿐 아니라 해외 시장 사업 정밀 검토
 - ※ 우리나라는 앞으로 8년간 연 4~5%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내야 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여타국의 감축행동 견인을 위한 NDC 의욕 증진은 한동안 협상을 통해 진전시키기 어려운 상황 → NDC 갱신 촉구 이외 별다른 압박 수단 별무
 - 국내 석탄발전 단계적 축소 및 화석연료보조금 철폐 관련 이행 로드맵 마련 또는 모든 화석연료의 철폐 요구가 집중 제기될 것을 대비해야 할 필요

- ※ COP26 남아공 JETP 발표에 이어 G20 계기 200억불 규모의 인도네시아 JETP가 발표되는 등 G7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 사업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이 확산
 - 아울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참여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
 - (재원: 공여국 확대 대응) 개도국의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선진국의 지원 확대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선진국은 **공여국 기반 확대(Broadening Donor Base)**를 위해 현재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바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특히, 내년 구체 운영방안이 본격 논의될 손실과 피해 기금 관련, 미국과 EU는 협상 과정에서 공여국 기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 관련 기준으로 거론되는 ‘고소득 국가’, ‘다배출국가’, ‘주요경제국’ 등에 우리나라는 모두 해당하는바, 장기적으로 우리 국격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적인 검토 필요. 끝.

패널토의 5

박연정 | 고려대학교(포럼 COP27 대학생 참관단원)

COP27의 과제: '이행 COP'은 계속된다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개최되기 전, 총회에 대한 전망과 관점은 매우 상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장국인 이집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가 지적되며 COP의 개최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 깊은 코카콜라와 후원 관계를 맺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 전반의 기후 행동 역시 큰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 에너지 위기와 경제 침체가 지속되었고,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금 가동하겠다는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COP27이 개최되기 앞서 지난 10월 26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발표한 '2022 NDC 종합 보고서'는 당사국들이 이제껏 제출한 NDC를 완전히 이행하더라도 2030년의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수준보다 10.6%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번 세기 말에 지구 평균 온도가 2.5도 상승할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써,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는 아주 거리가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좌절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수치가 있기에 더 높은 의욕을 갖고 강력한 기후 대응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여러 국제 평화 조약이 맺어져 '평화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다는 삼엘세이크로 기대와 함께 향했습니다.

실제로 COP27은 감축 의제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한계점을 남기기도 했지만,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에 합의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손실과 피해 의제와 관련된 비공식 회의를 중점적으로 참관하던 저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 내용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당 기금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운영해나갈지 주목하며,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결정사항과 의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OP27이 'Implementation(이행) COP'을 내세운 이상, COP27은 11월 20일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진정으로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COP27은 끝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 행동 이행이 가능해지는 그날까지 COP27의 위임사항은 계속되며,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COP27의 가장 근본적인 후속 과제입니다.

언론의 과제: 기후변화를 위한 노력을 모두에게

누군가 저에게 '참관을 하고 나서 무엇이 가장 달라졌냐'고 묻는다면, 저는 기후 대응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전까지 저는 기후변화에 대해 배우면 배우수록 회의적인 마음가짐이 생겨났습니다. 전 세계 기후 대응의 속도와 정도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현상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후변화 상황을 보며 불안과 무력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기후우울증’이 하나의 우울장애로 2017년 정의되었고,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2실무그룹 보고서'에서 역시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참관을 하면서, 회의에서 다룬 문서를 정하는 것조차 오랜 시간과 논의를 거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소한 부분에 대해 합의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협상의 세계에서 파리협정을 비롯해 이제껏 COP를 통해 이뤄낼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의 가치를 실감했고,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은 조금씩 진전되고 있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많은 옵저버들이 회의 참관을 위해 회의장 바닥에 앉는 것을 주저하지 않거나, 옵저버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방에 들어가기 위해 줄까지 서는 모습은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느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은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COP의 결과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장 내부의 모습들도 취재하여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의 COP에 대한 관심은 외신에 비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영미권 경제매체는 COP27을 특집으로 만들어 다양한 기사를 낸 반면, 우리나라에서 COP27을 보도한 언론사는 세네 곳에 불과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사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루는 대신 경제와 외교 관련 주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대 후반부터 60대까지의 한국인 응답자 2000명 중 73%가 언론의 기후 보도량이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언론은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올리는 수단이 자 국민의 관심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언론사에서 COP에 대해 보도 하는 것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지할 때, 그리고 기후변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COP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다각도로 조명할 때, COP에서의 노력이 국내에서도 알려지며 우리 국민 공동의 대응이 더욱 가능해질 것입니다.

청년의 과제: 마음을 울리는 표현방식

위와 같은 현황으로 보아 국내 언론사는 그들이 전하는 기사 하나, 말 한마디의 영향력을 잘 알지 못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저는 참관 과정에서 한 마디의 말이 가질 수 있는 힘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COP27의 예정 폐회일이었던 11월 18일 열린 Stocktaking Plenary에서는 가나에서 온 10살 소녀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소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나의 홍수 피해를 말한 후 ‘지불기한이 지났다’는 뜻의 ‘Payment Overdue’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며 선진국의 책임을 촉구했고, 이는 회의장 안에 있던 모든 이의 기립박수를 자아냈습니다. 사실 온실가스 배출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국가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국가에게 보상하라는 메시지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제기된 개발

도상국의 주장을 지불기한에 비유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익숙해지고 당연시되는 주장이더라도 표현방식을 바꾼다면 다시 한 번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는 비단 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회의장 내에서 한 해외 단체가 손실과 피해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다. 그 덕에 그냥 지나칠 뻔한 캠페인을 돌아보게 되었고 기억할 수 있게 되었죠.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누구보다 청년들이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을 고민하고 이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면하게 될 당사자인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더해진다면, 더없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참관 후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기후 대응을 외치는 저의 언어를 더욱 가꾸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릴 만한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지식을 쌓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닿고 닿아 점차 퍼지게 된다면, 모두가 기후변화를 마음 한 켠에 품은 채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